



항공 화물 보안기준

-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5호, 2004. 8. 6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화물보안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화물전용기에 탑재하는 화물중 공항이외의 지역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보안통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체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화물”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기내식, 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지정화주”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점과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공항이외의 지역에서 항공화물을 최초로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정대리점”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공항이외의 지역에서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실시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4. “대리자”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화물을 공항외 지역에서 보안통제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화주 또는 지정된 대리점을 말한다.
5. “보안통제”라 함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물건 등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도록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색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보안통제 항공화물”이라 함은 대리자에 의해 보안통제된 화물을 말한다.
7. “화물명세서”라 함은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목록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8. “화주신고서”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화주로 지정을 받은 서류를 말한다.

9. “화물보안신고서”라 함은 대리자가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0. “공항이외의 지역”이라 함은 공항내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책임) 공항내 화물터미널 이외의 지역(이하 “공항외 지역”이라 한다)에서 화물기에 탑재하기 위해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의 책임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제5조(항공화물 보안통제 대리자의 지정 등)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화주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체를 지정하여 공항외 지역에서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지정화주 또는 지정대리점의 지정기준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리자의 지정은 항공운송사업자와 복합주선업체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간 별지 제1호에 의한 서면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함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항공운송사업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정대리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화주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자 지정자격 등) ①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복합운송주선업자
2. 화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최초 포장을 하는 화주
- ② 항공운송사업자와 지정화주 또는 지정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항공사와 지정신

청일 이전 최소 6월 기간 중 3회 이상 항공화물을 운송 의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7조(대리자 지정절차) ①대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화주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2.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
3. 사업자 등록증
4.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서
6. 납세증명서
7. 사업계획서
8. 화물운송 거래실적
9. 보안통제화물 취급직원 명단 및 신원조회 결과 (또는 공항출입증 발급증)
10.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11. 보안통제화물 운송 지정 대상차량 및 운전자
12. 화물운송 지정대상 차량 및 차량등록증

②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자 지정 변경 및 취소 등) ①화물통제 대리자는 제7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보안통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지정받은 대리자가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자체 보안통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①항공화물 대리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을 항공운

송사업자(지방항공청장)에게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인을 한 때에는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보안 업무 및 보안통제 책임자 지정
 2. 항공보안통제 시설 및 장비 관리
 3. 항공보안통제 직원 선정기준 및 신원조회 절차
 4. 항공보안통제 직원의 교육훈련
 5. 시설 출입통제 절차
 6. 항공화물 관리에 대한 보안대책 및 운송절차
- ③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은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자의 시설기준 등) ①대리자가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살로 보호된 장소 또는 화물의 포장이나 보관을 위해 일반구역과 분리된 장소로서 별도로 구분된 시설이나, 빌딩, 복합주택단지 및 독립된 건축물
2. 보안통제가 완료된 항공화물과 완료되지 않은 화물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에서 비인가자로부터 항공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사 직원에 의한 시설 및 항공화물에 대한 경비
2. 야간 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 녹화가 가능한 CCTV 또는 기타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추고 출입구는 잠금장치 및 썰 등의 보안장치를 설치
3. 경비보안업체에 위탁

제11조(항공화물 관리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①대리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의 취급장소 또는 보관장소에 인가되지 아니한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자는 인가되지 아니한 자 또는 방문객 등이 보안통제가 완료된 지역에 무단으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기록은 최소 3개월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소
3. 출입사유
4. 출입시간
5. 출입장소
6. 인솔자
7. 확인자 서명

제12조(항공화물의 보안통제) ①대리자가 항공화물을 포장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보안성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작업 실시
2. 항공화물을 취급하거나, 통제하는 자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충족
3. 지정화주가 항공화물을 포장하는 때에는 육안검사 또는 개봉검색을 하여야 하며, 지정대리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보안통제
4. 보안통제가 완료된 항공화물은 포장단위별로 보안통제 완료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안통제 완료표식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항공화물의 작업, 운송 및 보관시 비인가자 또는 비인가 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
6. 부득이하게 항공화물을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감독하에 실시

② 지정대리점의 장 또는 승인된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화주로부터 접수받은 화물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된 경우 보안통제된 항공화물로 취급할 수 있다.
2. 비 지정화주 또는 비 지정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화물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대리자로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이 운송된 경우에는 보안통제를 실시한 항공화물로 취급할 수 있다.
- ④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점은 운송된 항공화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로 취급하여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반하지 않고 운송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된 서류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2. 혼재화물인 경우 화물보안신고서에 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과 완료되지 아니한 항공화물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안통제가 되지 않고 운송된 항공화물
 4. 혼재된 항공화물 중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

제13조(항공화물의 운송) ①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원 및 차량으로 운송

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대리자의 직원 및 소유차량
2.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통제 및 절차 등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승인한 화물전용운송회사 소속 차량 및 직원
- ② 대리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을 차량에 탑재할 때까지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에 탑재한 후에는 잠금장치 또는 봉인을 하고, 최종확인자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보안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송중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된 탑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운송시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봉인을 하여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을 운송하도록 승인한 운전자와 차량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자는 화물운송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운송차량에는 차량등록증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⑤ 대리자는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화주신고서 및 화물보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화물의 접수 및 보관) ①대리자로부터 항공화물을 접수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보안통제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화주신고서
2. 화물보안신고서
3. 지정받은 직원 및 차량에 의한 운송상태
4. 운송과정의 잠금장치 및 봉인 상태
5. 보안통제화물의 보안통제 표식부착 상태 확인
6. 항공화물의 외부검사를 통해 운송 중 화물이 손괴되거나, 침입 흔적의 확인
- ②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화물은 보안통제가 되지 않은 화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검색방법에 따라 검색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은 보안통제되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무작위 보안검색) ①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점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점 또는 지정화주가 보안통제한 항공화물에 대하여 무작위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작위 검색은 우발계획에서 정한 위협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GREEN 단계

-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정대리점이 위탁한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중 최소 5% 이상 X-선 장비에 의한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 나. 지정대리점은 지정화주가 위탁한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중 최소 5% 이상 X-선 장비에 의한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2. YELLOW 단계

-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정대리점이 위탁한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중 최소 10%이상 X-선 장비에 의한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 나. 지정대리점은 지정화주가 위탁한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중 최소 20%이상 X-선 장비에 의한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3. RED 단계

-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대리자가 위탁한 모든 항공화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점은 무작위 표본검색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최소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화주신고서) ①대리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의한 화주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화물 인도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주신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주의 성명, 상호, 연락처 및 주소
2. 체결된 운송계약서 사본 또는 서면협약서 지정번호
3. 운송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고확인서 및 신분확인 증명서
4. 사전 통보된 운송차량 또는 지정된 운송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등록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주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통제 되지 아니한 화물로 분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검색방법을 준용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화주신고서에는 화물보안성 유지 및 운송중 보안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화물명세서) ①대리자가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화물명세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명세서는 IATA에서 정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화물명세서에는 보안통제가 완료된 화물과 완료되지 아니한 화물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항공화물보안신고서) ①지정화주 또는 지정대리점이 화물을 지정대리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화주 또는 지정대리점 명, 연락처 및 주소
2. 보안통제 화물 운송방법
3. 화물운송자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4. 화물보안신고서 유효기간
5. 화물통제 적용 및 미적용 구분
6. 보안통제 방법
7. 운송장 번호

제19조(보안통제 수행 직원의 자격) ①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위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합운송수산업체 보안업무담당자 및 지정화주 대표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공화물을 통제하는 직원
3. 항공화물 보안검사 또는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검색을 실시하는 자
4. 항공화물관리지역으로 접근 또는 출입하는 자를 통제하는 자
5. 보안통제를 완료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자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는 범죄,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경력이 없어야 한다

④ 항공화물을 보안통제하는 자의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력은 두눈이 맨눈 시력 각각 0.2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이상이어야 하며, 색맹 또는 색각이 아니어야 한다.
2. 청력은 완전하여야 한다.
3. 효과적으로 언어를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에도 더듬거리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대리자는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를 화물통제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요청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교육) ①대리자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하기 전에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안교육에 포함할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보안의 목적 및 조직
2. 화물관리의 원칙
3. 접근통제 및 화물보호
4. 보안통제의 원칙
5. 은폐 또는 은닉 방법
6. 의심스런 환경에 대한 대응조치
7. 의심, 금지물품 발견시 대응조치
8. 장비에 의한 보안검색 방법 및 검색장비의 사용법 (보안검색 장비 운용자만 해당)
9. 통제지역의 감시
10. 수검색방법
11. 전화폭파위협시 대응절차
12. 관리 감독자의 보안
13. 항공기 접근절차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교육을 이수한 자는 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점검 및 감독) ①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대리자에 대하여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에 따라 보안통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정을 취소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대리자의 화물관련시설 및 보안통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대리자가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는 감독자를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하고, 이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점검업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⑤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대리자가 실시한 보안통제가 소홀하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22조(서류 보관) 항공운송사업자는 대리자가 제출한 화주신고서, 화물명세서 및 화물보안신고서를 최소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위해물품 발견시 절차) ①항공화물을 포장 또는 검사시 폭발물 등 테러위험이 되는 화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인근 경찰서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협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2005.1.1부터)에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